
산업안전보건기본계획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2014.02.

경영지원실

목 차

I. 2014년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

1. 기본개요	1
2. 중점추진과제	2
2-1. 산업재해 예방활동	
2-2. 보건증진 활동	4
2-3. 사업장의 책임강화(관리자 관심제고)	6
3. 기타사항	8

II.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분석	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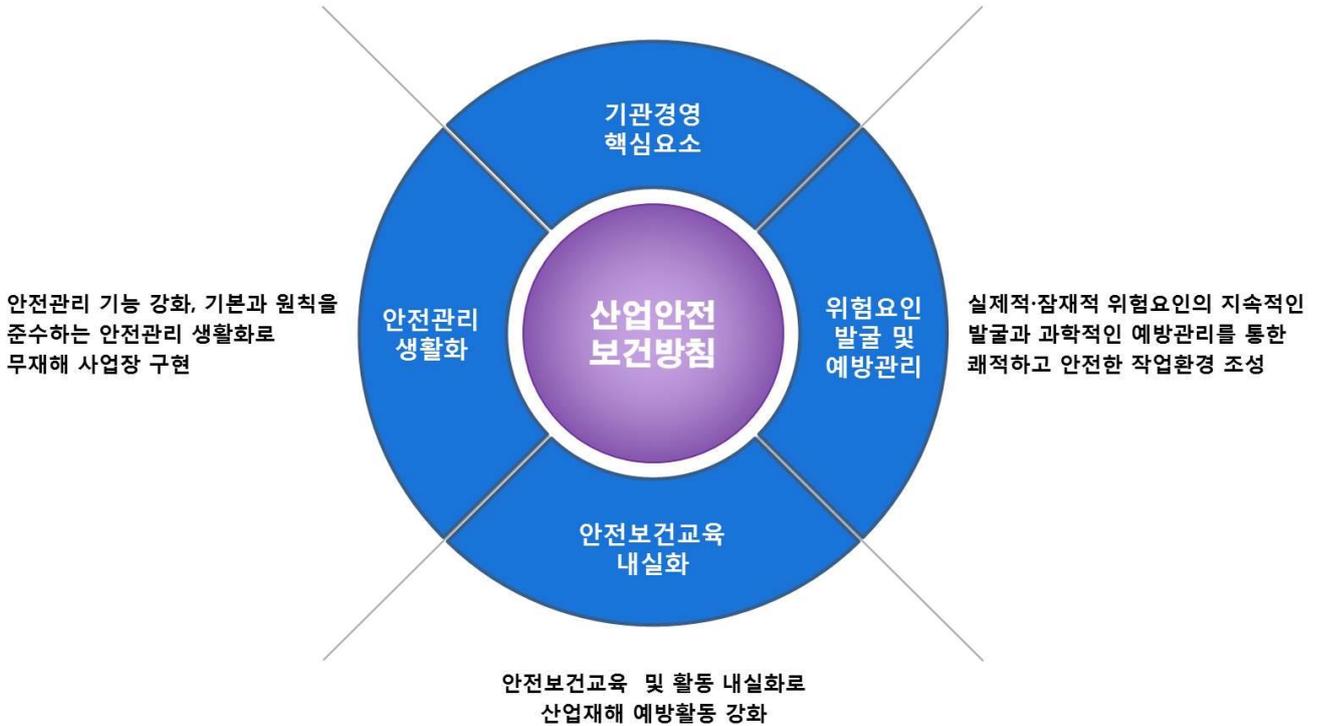
별첨

1.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13
2. 업무상 재해발생시 보고 및 처리절차	
3. 산업재해 조사표	
4. 안전실천 약속·결의 선서문	
5. 안전보건교육일지	
6.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7. 현장부서/팀 무재해 4단계 안전활동(일일)	
8. '12년 고용노동부 특감 결과(산업안전보건분야)	
9. 산업안전보건활동 주요 관리사항(서류 등)	
10. 구내식당 위생점검표	

비전 · 목표

재해예방으로 인명존중 안전기업문화 정착

산업안전보건을 기관경영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본 산업안전보건방침을 근거로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경영을 추진



- 산업안전보건을 핵심요소로 간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경영 추진
- 실제적·잠재적 위험요인의 지속적인 개선과 과학적인 예방활동 수행
- 안전관리 기능 강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안전관리 생활화
- 안전보건교육 및 활동의 내실화로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I. 2014년도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

1. 기본개요

가. 목적

- 각종 산업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 최소화
-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으로 밝고 건강한 직장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

나. 수립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규정 제7조(안전보건관리계획 등)

다. 추진방향

-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관리의 생활화
- 안전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직무사고 예방
- 안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로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관리 생활화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

※ 2014년 안전보건 대외 동향

- ▶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 (자율안전관리체계 확산 기반 마련)
 - 안전보건관리체계 전 업종 확대 :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야간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시행 : 300인 이상(2014년)
 - 위험성평가에 대한 법적기반 명확화(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 하청업체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강화
 -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강화(입법예고) : 벌금형 폐지, 3년이상 유기징역
 - ▶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시행
 - 전담 감독관 지정, 패트롤 점검 시행, 사업 즉시 중지명령 등
-

2. 2014 산업안전보건활동 중점추진 과제

2-1.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이행

- 본 계획에 준하여 각 사업장(지역본부, 네트단 등) 계획 수립 : 2014.3월 (중)

나. 『안전점검의 날 행사(매월 4일)』 안전테마 행사 추진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 행사배경 : 자율적인 안전점검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 주관기관 : 지역고객본부, 네트워크운용단 현업부서
- 주요행사 : 『안전실천 약속·결의 선서문』 낭독 등
 -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고취 등 안전관리 행사 실시
 - 각 분야별 시기별 점검과제를 선정,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 무재해기/무재해 기록판 일제정비 및 개인보호구(안전모 등) 점검 등
- 월별 주요테마 행사

구분	주요내용
1분기	해빙기 안전대책, 등주 작업 시 안전대책, 계절테마 등
2분기	안전응급조치요령, 추락사고 예방대책,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등
3분기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하절기 재해예방대책(밀폐공간 안전작업) 등
4분기	교통사고 예방, 화재예방/소화기 사용법,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등

※ 산업안전보건규정 제17조(안전점검)

- ① 기관장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부서 『정기안전보건교육』 추진

- 배경 : 교육을 통하여 건강증진법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법령 의무사항 준수
- 교육대상 : 현장 및 사업부서 전사원
 - 교육제외 : 순수 사무동 사옥(분당, 서초, 광화문 등)
- 추진사항
 - 교육운영 기준정립 및 교육대상자(튜터포함) 선발 : 2014.02(중)
 - 교육시행 : 2014.02.24 ~ 2014.12.19
 - 교육시간 : 매분기별 6시간 이상

라. 제13회 산업안전보건대회(안전 Leader 세미나) 개최

- 배경 : 노사합동 마인드 확산 등 건강·보건정보 업무 공유 등
- 행사목적
 - 안전보건활동 성과 분석 및 금년도 사업계획, 중점사항 설명회
 - 우수안전활동 사례발표 등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주요행사
 - 산업안전보건활동 성과분석, 외부 전문강사 특강, 안전 세미나(발표회 등)
 - 안전결의선서문 낭독 및 안전보건/산재/노무관리 전문상담 등
- 개최일정 : '14년 2/4분기 예정

마. 종합안전보건활동 지도점검 시행

- 배경 : 자율 안전/보건활동 이행사항 지도점검 및 계도
- 필요성 : 산재발생사업장 안전활동 이행실태 등 외부규제기관 점검 대비
- 점검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여부, 안전보건교육관리, 안전점검의 날 행사 관리
 - 재해 발생사업장 재해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기타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
- 점검일정 : 2/4분기부터 수시 시행

바. 계절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별 안전보건대책 수립

- 배경 :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수립 및 시행
- 필요성 : 취약 시기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제시
- 주관부서 : 지역고객본부, 네트워크운용단 등
- 수립시기 : 해빙기, 체육행사, 하절기(구내식당 위생 등), 동절기(동상예방 등)

사. 현장부서 무재해 4단계 일일 안전활동 시행

- 배경 : 팀원간 일일 안전활동 시행으로 재해예방 등 안전팀웍 형성
- 시행부서 : 현장부서 전체(지사, 사업지원센터, 센터 등)
- 주요내용
 - 1단계 : 출근 후 현장부터 안전 3분 미팅
 - 2단계 : 작업지시 및 개인보호구 점검
 - 3단계 : 현장 출동 전 위험예지활동
 - 4단계 : 작업종료 및 정리정돈

2-2. 보건증진 예방활동

가. 일반건강검진 시행

- 배경 :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질병재해 예방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 대상 : 전 임직원
- 시행시기 : 4월 ~ 11월
- 조치사항
 - 검진결과 의사의 소견에 따른 치료 및 후속관리 시행
 - 보건관리자의 건강상담 등 지속적인 유소견자 관리
 -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작업장소변경, 작업전환 등 적의조치)
- ※ 2차 검진(당뇨·고혈압) 대상자도 필히 재검진 시행(과태료 부과대상)

나. 작업환경 측정으로 현장의 건강장해 예방

- 배경 :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현장의 건강장해 미연에 방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규칙 제93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 대상기관 : 지역고객본부 사업지원센터 관리 통신맨홀(밀폐공간)
- 추진일정 :
 - 측정비용(예산) 소요 조사 : 2014.04월 중
 - 예산배정 및 작업환경 측정 시행 : 2014.06월 중
- 시행결과 :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측정결과 보고(측정 후 1개월 이내)
 - ※ 국사최적화 이행사업장의 『사업장 실내환경측정』 병행 시행

다.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운영

- 배경 : 질식재해 등 유해작업장에 대한 사전 사고예방활동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 대상기관 : 지역고객본부 사업지원센터 CM팀 등
- 추진사항
 - 사업장별 해당 부서/팀에서 유해장소 선정
 - 주기적인 유해가스 측정을 통한 기록·보전 및 검출 시 개선계획 수립 이행
 - 하절기 등 장마철에는 집중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활동 강화
 - 밀폐공간 긴급구조 훈련 시행 : 반기 1회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라. 구내식당 위생관리로 건강한 사업장 구현

- 배경 : 구내식당(집단급식소) 위생관리로 건강한 노동력 유지 증진
- 필요성
 - 하절기(장마철) 개인위생 등 식자재 위생관리 철저로 식중독 예방
 - 하절기 재해예방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
- 점검주기 : 월 1회(식중독 위험지수 증가시는 주1회 시행)
- 주관부서 : 고객본부, 네트워크운용단 등
- 위생점검 : 반기 1회(경영지원실, 지역본부/운용단 합동시행)

마. 현장직원 대상 방진마스크 지급

- 배경 : 미세먼지로 인한 현장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현장직원 호흡기 질환 예방
- 지급대상 : Customer부문, 네트워크부문 현장직원(ITE, CM, CS직 등)
- 지급품목 : 방진마스크(미세먼지차단용)
- 지급방법 : 지역본부/네트단별 예산한도 내 구매 및 배포
 - ※ 기관별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분 발생 시 추가 지급

바. 질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자료(테마자료 등) 제공

- 배경 : 직원들의 건강증진 방법 및 건강에 관한 상식 안내
- 방법 : 생로병사의 비밀 / 위기탈출 넘버원 등 교육자료 제공
- 주관부서 : 경영지원실
- 시기 : 2014년 연중 시행.

2-3. 사업장의 책임강화(관리자의 관심제고)

가. 우수안전보건활동 포상 시행

- 배경 : 포상 지급으로 사기진작 등 우수 안전활동(사례) 전사 전파
- 대상 : 지역고객본부
- 포상기준
 - 2014년 지역고객본부 내 전 사업장(지사 등) 무재해 달성 (본부)
 - 위탁대행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증진 등 보건활동 추진 (실적)
 - ☞ 예 : 뇌·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건강증진 상담·지도 등
 - 안전보건활동 지시사항 이행도 및 지역고객본부 자체 산재예방 활동 (실적)
 - ☞ 예 :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율, 자체활동(현장 환경개선 활동) 등
- 포상시기 : '14년 4/4분기 예정

나. 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구매 추진

- 배경 : 노후화된 개인보호구 교체로 현장 물리적 요인에 의한 재해 예방
- 대상 : 지역고객본부 현업기관 (현장부서/팀)
- 추진개요
 - 지역고객본부별 연간 선로시설수선유지비 배정(예산) 확인 : Customer부문 협의
 - 선로시설수선유지비의 10%범위 현장부서 안전장비 구매 조사 : 지역고객본부
 - ☞ 1/4분기 지역고객본부별 안전장비 구매 최적화 자체계획서 수립 후 적재·적소 구매

다. 업무표준 가이드북(업무메뉴얼) 제작·배포

- 배경 : 업무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업무 효율성 등 신속 업무처리(지원)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 산재보상(재해보상 서식 표준화), 산안법령 등 주요내용 (해석)
 - 건강검진, 위생관리, 산재관리시스템 프로세스 운영 (설명)
 - 중대재해 발생시 처리지침 (신속한 재해수습, 서류준비 사항 등)
 -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 실태 점검 시 대응방안 등
- 배포일정 : 2014. 2/4분기

라. 지역고객본부(사업장) 재해발생현황 명단 (공개)

- 배경 : 자율적 재해예방 노력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 ☞ 정부에서도 불량사업장 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공표제도를 도입·운영
- 공개시기 : 산재발생 사업장 명단을 2014 상반기 성과분석 시 전기관 문서 (공개)
 - ☞ 공개내용 : 지역고객본부명,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건수·현황 등

마. 지역고객본부 내 재해발생시 사고사례전파 강화

- 배경 : 동종재해 재발방지 등 법령 준수사항
- 전파범위
 - 안전사고/질병사망 : 경영지원실
 - 안전사고/질병재해 : 지역고객본부 자체 문서발송 (교육 / 재발방지대책 포함)

바. 'Safety 메시지' 운영·발송

- 배경 : 기상에 따라 재해예방 사전안내로 안전불감증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운영개요
 - OC문자(SMS)서비스를 활용하여 재해예방 문자 발송
 - 발 송 자 : 지사장/센터장/현장팀장
 - 수 신 자 : 현장사원(Mass고객팀, CS컨설팅팀, CM팀 등)
 - 발송시기 : 폭염, 폭설, 폭우, 도로결빙, 태풍 등 기상특보 시
 - ☞ 2014 경영지원실 종합안전보건활동 지도 점검 시 필수점검 (항목)

사. 안전(산재)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 공모배경 : 전 사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홍보
- 공모대상 :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공모
- 향후계획 : 우수작품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에 출품 (예정)
안전 행사 및 대외 CSR 안전보건활동 적극 활용
- 추진일정 : '14년 5월 중(가정의 달)

아. 업무상 재해사원(산재자) 위문·격려

- 배경
 - 업무상 재해 사원 위문을 통하여 회사의 감성경영 실천
 - 소외될 수 있는 재해사원 및 가족에게 따뜻한 온정 전달
- 시행방법
 - 해당부서장/팀장이 산재요양병원 및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위로·격려
 - 장기요양자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조속한 사업장 복귀에 적극 지원 등
- 추진일정 : '14년 3/4분기 중

3. 기타사항

가. 아차사고 사례집 발간을 통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

- 배경 : 현장활동 안전의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안전마인드 고취
- 방법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발표시간 삽입 (각 기관별 시행)
 - 지역본부/네트단에서는 매달 우수사례 선정 후 경영지원실로 보고
- 추진사항
 - 사고사례집 발간 및 배포 : 경영지원실 (지속적인 업데이트)
 - 관련부서 공유를 통해 유해요인 개선 및 작업절차서의 지속적 수정
- 기대효과 : 사고에 대한 간접경험을 통한 유사 사고 미연에 방지

나. 자문노무사 위촉으로 산업안전분야 전문상담

- 자문배경 :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오류 해석에 따른 Risk 최소화
- 자문기관 : 삼정노무법인(신항철, 전옥봉 노무사 / 02-521-3588)
- 위촉기간 : 2014.01.01 ~ 2014.12.31(1년간)
- 주요자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산재보상, 근로기준법 등
 - ※ 자문요청 시 경영지원실 안전보건팀으로 사전 연락 요망.

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시행

- 배경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사전발견을 통한 안전한 직장 구현
- 프로그램 개발 : 대한산업안전협회, 자문노무법인 자문을 통한 개발
- 추진계획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 ~ '14년 3월
 - 사업장 위험성 평가 담당 교육 및 프로그램 시행 : '14년 4월 ~

라. 사업장 공생협력 프로그램 시행

- 배경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 대상 : 100인 이상 사업장
- 활동 : 협력사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위험성 평가 등 기술지원
- 추진계획
 - 사업장 공생협력 프로그램 표준안 마련 : '14년 3월 중
 - 전 사업장 시행(대상사업장) : '14년 4월 ~

마. 안전·보건관리자 위탁대행기관 선정

□ 배경

-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행
- 직원들의 보건지도·상담 등으로 건강 유지증진 도모

□ 대상기관 : 50인 이상 사업장(순수 사무기관 제외)

□ 업체선정 : 산안법에 준하는 업체(산업안전지도사, 안전기술사 등 보유)

□ 위탁계약 : G/L설정(경영지원실), 개별계약(지사급 사옥)

□ 중점 추진사항

- 타 사옥 근무 소속지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지사, 사업지원센터, 운용센터 등)
- 위탁대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행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분기별 테마점검 시행, 전문강사 특강, 현장 맞춤형 교육 시행 등)

바. 업무담당자 역량향상 교육 시행

□ 배경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약화로 Risk에 관리능력 부족

□ 교육주관 : 경영지원실

□ 교육대상 : 고객본부(경영지원팀), 네트단(운용지원부) 안전업무 담당자

□ 교육시기 : 반기 1회(4월, 10월 예정)

□ 주요내용

- 최근 개정된 산안법령 해석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 외부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방안
- 우수 안전관리 사례발표 등 정보교류의 장 마련 등

바.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이러닝 프로세스 개선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개선사항 : 각 기관별 오프라인 교육 시행 → 인재개발원 교육시스템 활용(이러닝)

□ 교육시기 : 채용 발생 시 즉시 교육 시행(JIT 교육방식)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공통/사무직)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이해, 건강테마 등
- (비사무직) 공통사항 포함, 안전한 현장작업 방법(등주작업 등) 추가

□ 시행시기 : 2014년 3/4분기 시행

II.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분석

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

구분	근로자수 (a)	합계 (b=c+d)	사망(c)	부상(d)	재해율 (e = b/a)	비고
2013년	32,039명	60명	2명	58명	0.19%	근로자 (계약직 포함)
2012년	32,267명	97명	2명	95명	0.30%	
2011년	31,568명	50명	3명	47명	0.16%	

※ 동종업계 재해율 : 0.59% / 국내 전체 평균 재해율 : 0.69% 『 출처 : 고용노동부(2012년) 』

※ 현재 34명의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 중.(14.02기준)

나. 최근 3년 분야별 재해 현황

분야별	현장작업				차량		질병		기타		합계	
	주상	맨홀	덱내	기타	차량	이륜	뇌심혈관	기타	체육행사	기타		
총괄	2013	26	0	20	1	3	0	0	1	4	5	60
	2012	33	4	35	2	6	0	1	1	8	7	97
	2011	15	2	19	1	6	0	0	0	4	3	50
재해자(명)	74	6	74	4	15	0	1	2	16	15	207	
분야별 (비율)	158				15		3		31			
	76.3%				7.2%		1.4%		15.0%			
재해 형태 별	추락	55		29							2	86
	전도	15	2	24		1				14	8	64
	협착	4	3	12						1	2	22
	충돌			3		14				1	1	19
	기타		1	6	4			1	2		2	16
	소계	74	6	74	4	15	0	1	2	16	15	207

□ '13년 업무상 재해는 60건으로 전년대비 38.1% 감소되었으나,
- 현장사고의 대표적 유형인 추락·전도사고의 예방개선 노력이 요구됨

□ 재해율은 평균 0.22%로 동종업계(0.59%) 대비 38% 수준임

□ 중대재해 : 추락(1건), 차량사고(1건) 발생

다. 최근 3년 분야별 재해 상세 분석

□ '13년 재해 60건으로 전년대비 38.1%감소, 3년 평균대비 13% 감소

- 현장인력 고령화로 현장작업 발생빈도가 높은 편임(재해자 평균 47세)
- 현장작업 중 '주상/덤패'의 안전사고가 93.7%로 재해 발생빈도가 매우 높음.
 - ※ 현장 추락·전도 재해건수 : '11년 33건 / '12년 71건 / '13년 46건
- 주상/덤패 작업 중 '추락·전도' 재해비율이 83.1%로 재래형 반복재해가 지속 발생
 - ☞ 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불안정한 행동(88%) : 안전수칙 준수/안전행동 습관화 필요
 - ☞ 무재해 일일 안전활동 '필히' 시행 (CS컨설팅팀/Mass고객팀/CM팀 등)

□ 업무상 재해 중 현장 재래형 반복재해(추락/전도) 증가 추세

- 안전불감증, 조급증 등 재해의 대부분이 『인재사고』로 **주기적인 반복교육 필수**
 - ☞ '개인 보호구' 중요성 강조 : 사망 → 중상 → 경상 → 아차사고
 - ☞ 하인리히의 재해법칙 1 : 29 : 300 (1건의 사망은 29건의 부상, 300건의 아차사고)
- 매월 안전행사 내실화 운영, 정기적인 안전교육, 관리자 재해예방 관심 제고
- 지역 본부/네트단에서의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 강화로 안전사고 감소 추세
 - ☞ '14년은 『**현장 다발성 재래 재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 타 사업장 우수활동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장 안전활동 개선 시행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밀착형 교육 시행으로 과학적인 관리기법 도입 추진

□ 기타사고로는 체육행사 중 사고, 사무실 재배치 중 전도/협착사고

- 주요원인 : 개인부주의(불안정한 행동), 안전불감증, 사원 고령화 추세 등
 - ☞ 춘/추계 체육행사 시 문화행사 권고로 체육행사 중 사고가 감소 추세

□ 최근 3년간 질병사고 감소 추세

-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신설 후 질병산재승인 판정을 감소

라. 최근 3년 지역별 재해율 현황

구분	강북	강남	서부	부산	대구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3	10	6	5	4	5	7	2	6	4	3	4	4	60
'12	12	5	12	13	10	14	8	10	5	4	1	3	97
'11	3	5	4	14	6	5	3	3	1	1	5	0	50
합계	25	16	21	31	21	26	13	19	10	8	10	7	207
평균	8.3	5.3	7.0	10.3	7.0	8.7	4.3	6.3	3.3	2.7	3.3	2.3	69
재해율	0.26	0.19	0.26	0.33	0.30	0.52	0.43	0.36	0.45	0.26	0.86		

※ 대다수의 업무상 재해가 지역고객본부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고객본부만을 비교

□ 최근 3년 평균 재해율(0.32%)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고객본부

- 제주본부 > 전남본부 > 충북본부 > 전북본부 > 충남본부 > 부산본부 순

☞ 최근 3년 지역고객본부 전체 업무상 재해율(평균) : **0.32%**

※ 재해율 산정기준 : 본부 총 인원 대비 업무상 재해건수 평균(최근 3년)

※ 절대적인 재해건수로는 수도권강북고객본부가 가장 많이 발생.

□ 재해율을 보면, 관리감독체계(본부장, 지사장 등)의 안전예방관심이 절대적임

마. 최근 3년 월별 재해율 분석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3	8	5	4	9	5	3	7	2	4	7	3	3	60
'12	2	12	4	11	7	2	6	11	17	9	6	10	97
'11	8	3		3	4	8	4	2	6	3	4	5	50
합계	18	20	8	23	16	13	17	15	27	19	13	18	207
평균	6.0	6.7	4.0	7.7	5.3	4.3	5.7	5.0	9.0	6.3	4.3	6.0	

□ 최근 3년 업무상 재해(건) 가장 높게 발생한 월 세부현황

- 2월 : 해빙기 및 인사이동 기간으로 조급증(안전수칙 미준수) 등 재해급증

- 4월/10월 : 춘/추계 체육행사 중 사고발생(충분한 스트레칭 등 부족)

- 9월 : 자연재해에 따른 민원 고장수리의 무리한 복구작업(주말/야간 등)

☞ 지역적 특성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대다수, 지역본부 자체계획 수립 필요

▪ 계절별 위험요인 대책(안) : 해빙기, 춘/추 체육행사, 하절기, 동절기 등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 11 조)

산업안전보건법 이것만은 알아봅시다

연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1	제 10 조(보고의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사망 등 중대피해 발생시엔 지체없이 산업안전과에 전송 또는 전화 보고) ※요양신청서 제출 외에도 동일피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년 보관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제 11 조(법령요지게시)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 12 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지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경고표지(인화성물질 등) 시행규칙 별표 1의 2 참조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4	제 15 조(안전관리자) 제 16 조(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	미선임 기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과태료
5	제 23 조(안전상의조지)	○기계, 기구 기타설비(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제 24 조(보건상의조지)	○분진, 밀폐공간작업, 시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송기압, 온, 습도,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리대상 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제 31 조 (안전, 보건 교육)	○ 정기교육 : 생산직(매월 2시간), 사무직(매월 1시간),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 채용시 교육 : 건설업이외의(8시간이상), 건설업(1시간이상) ○ 특별교육: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건설업(2시간이상)	500만원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8	제 33 조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지 등)	○프레스, 전단기, 가스집합용접장치, 크레인, 승강기, 리프트, 교류아이스크림집기, 압력용기, 보일러, 톨러기, 연삭기, 목재동근톱, 동력식수동대패, 산업용로봇등은 방호장치 (지배한 내용은 아래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제 34 조(안전인증)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톨러기, 고소작업대 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제 36 조(안전검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2톤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원심기(산업용),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 톨러기, 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대당 10만원 또는 20만원)
11	제 38 조(제조동의허가) 제 38 조의 2 (석면조사) 등	○디클로로벤젠, 알파나프틸아민, 크롬산아연, 베릴륨, 비소 등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려는 경우 노동부 지방관청에 허가신청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함	5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제 41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비치 등)	○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전, 저장할 경우 <u>물질안전보건</u>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정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구분)
13	제 42 조(직업환경측정)	○분진, 화학물질 및 소음[80dB 이상 소음]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직업환경측정 실시(6월에 1회이상,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누락장도 따라 100만원, 500만원 구분)
14	제 43 조(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소음, 분진, 화학물질 노출 근로자 (직업환경측정을 하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다름, 1년 또는 2년)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근로자 1인당 20만원)

【붙임 2】

업무상 재해 발생시 보고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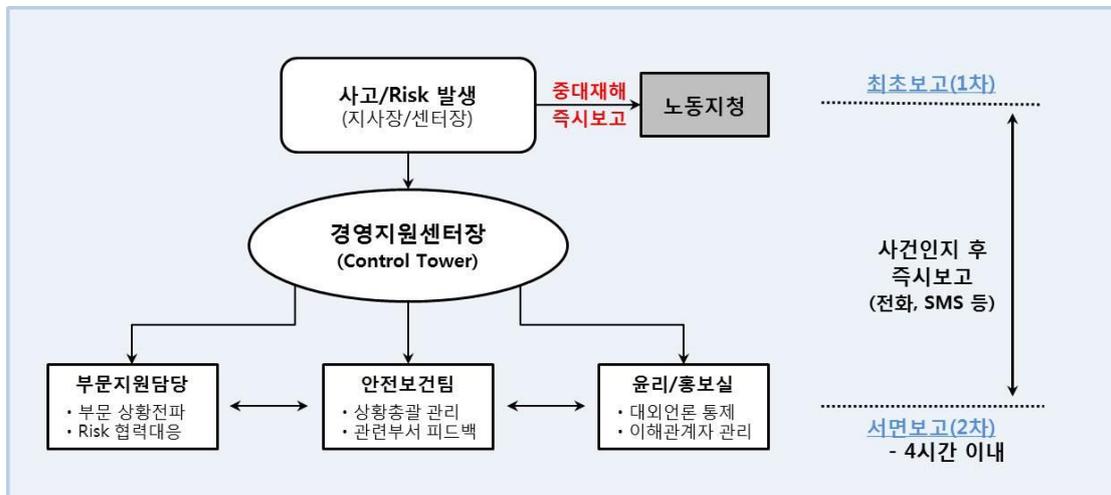
□ 보고의 목적

- 각종사고 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
- 원활한 업무수행, 대내·외 회사 이미지 실추 방지(외부감독기관 대응 등)
 - ※ 지역본부(네트워크운용단 등) 사고수습 대책반 구성 및 안전조치 확인

□ 사고의 정의

- 인적피해 : 업무 중 사고에 의한 직원의 부상, 사망, 장애 또는 질병
- 인적재해 중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즉시 보고(전화 등)

□ 업무상 재해 보고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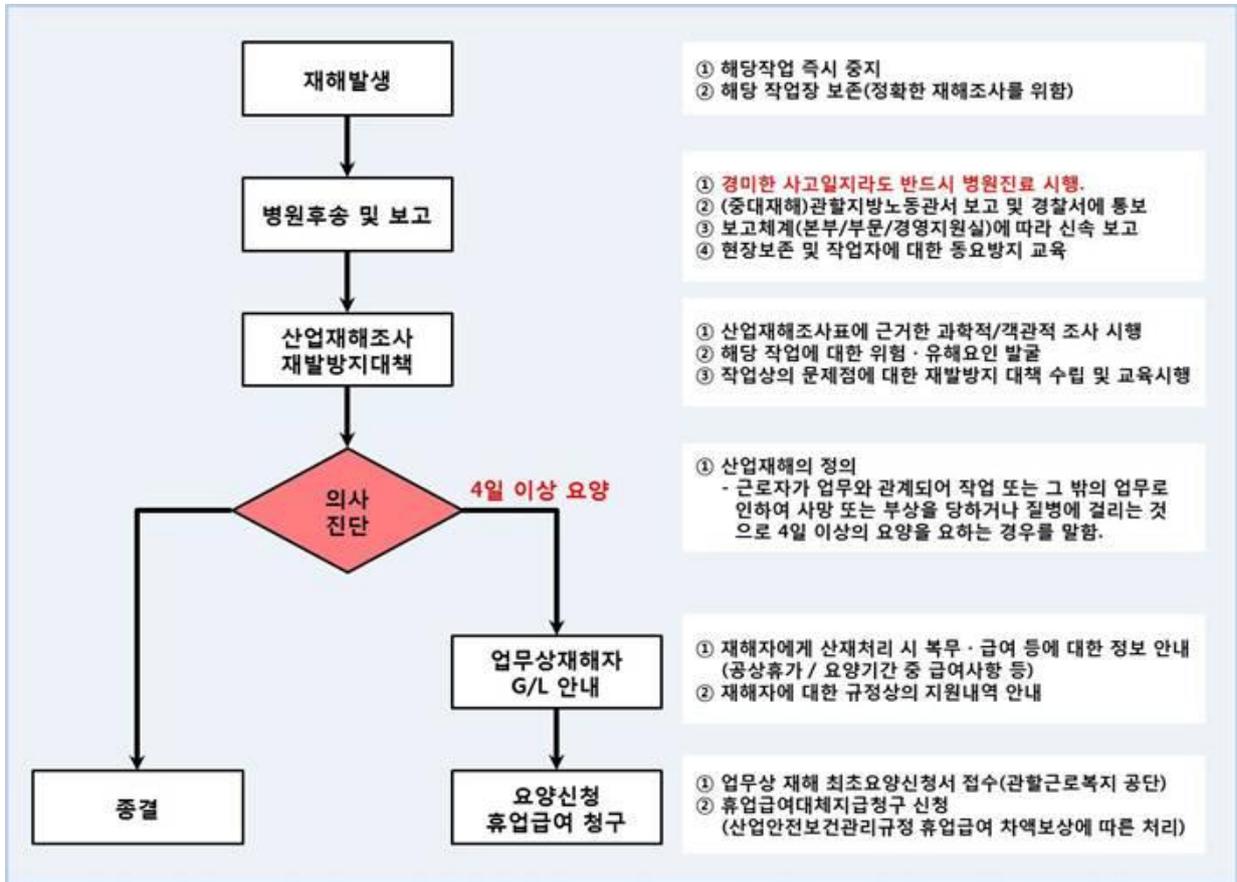


□ 업무상 재해 보고 시 유의사항

- 지역본부/운용단 담당자 부재 시 대무자 지정(업무지원팀장 등)
- 재해 사고 후 이상징후(재수술, 건강 악화 등) 발생 시 즉시 보고
- ☞ 중대재해시에는 문자로 신속·간략하게 즉시 보고(인적사항, 장소, 경위 등)
 - ※ 업무상 재해 경위서(사업장 작성), 확인사항(본부/운용단 작성)

업무상 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도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 방법



□ 산업재해 발생시 참고사항

- 서류 3부 :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기관 각 1부 보관
- 근로복지공단 제출서류는 민원실에 제출 (노동관서 보고는 산업안전과)
-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최초요양신청서는 필히 1개월 이내 제출
- 재해자 관련 보존자료
 - 사망 또는 중대 재해 시 : 현장보존 (조사 시까지)
 -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 인적사항 파악 및 진술서
 - 채용관련서류(작업일지,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근무상황카드 등)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사망시) 확보 등

【붙임 3】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 1 호 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위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란에 '[v]'표시를 합니다.

(제 1 쪽)

관리(산재)번호

사업체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명		지사명	
	업종		근로자수	
	소재지			
	생산품			
	사업장구분	[]원·도급 []1 차 수급 []2 차 수급 []그 밖의 사항()		
	건설업만 기 재	원·도급업체명		공사 종류
	공정률	%	공사 금액 백만원	

재해발생 개 요	발생일시	재해 발생 지역(부서)
-------------	------	--------------

재해발생 피 해	인적 피해 사망 ()명, 부상 ()명	물적피해 천원
	조업정지일	

재해 발생 과정 및 원인	재해원인물체·물질	
	재해 유발 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의 기록	※ 재해 관련 취급설비,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상황과 당시 작업자(또는 재해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함 -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함

재발 방지 계획

※ 유사 동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작성 및 시행할 것. (반드시 별지 사용)

(제 2 쪽)

[붙임 4]

안전실천 약속 · 결의 선서문

나는 내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내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내 사업장의 안전과 편안한 일터 구현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기본 원칙 실천**”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나는 항상 안전을 생활화하고 원칙과 기본을 철저히 준수한다.

하나, 나는 나 자신과 동료들 모든 위험과 유해로부터 기필코 보호한다.

하나, 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편안한 직장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안전사고 예방은 나와 회사에 중추적인 업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무재해 운동에 앞장선다

2014년 00월 00일

00고객본부 00지사 선서자대표 0 0 0

【붙임 5】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현업 전 직원 (보직자 제외)	분기 6시간 이상	이러닝
관리감독자 교육	현업팀장	연간 16시간 이상	이러닝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위탁
		보수 6시간 이상	위탁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위탁
		보수 24시간 이상	위탁
	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위탁
		보수 24시간 이상	위탁
채용 시 교육	일반직원	8시간 이상	발생시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일반직원	2시간 이상	발생시
특별교육	밀폐공간작업자	16시간 이상*	발생시

*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가능

□ 교육내용

○ 직원 등에 대한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

교육과정	내 용
정기안전 · 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
관리감독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채용시 교육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교육 (밀폐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붙임 6】

안전 보건 교육 일지

결	담당	○○	○○
재			

	정기교육()		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특별교육()
	사무직	사무직 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관련)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_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_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_ 연간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_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_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_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_2시간 이상	별표8의2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_2시간이상 별표8의2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_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또는 간헐작업_ 2시간 이상.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참석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내용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장소		비 고

[붙임 7] 현장부서/팀 무재해 4 단계 안전활동 (일일)

□ 대상 부서 : Mass고객팀, CS컨설팅팀, 특별기동팀

1단계 : 현장부서 안전3분 미팅

- 아침 인사와 함께 동료 상호간에 건강 체크
- 현장 출동전 안전3분(**기상특보시**) 미팅으로 안전불감증 사고 예방
 - 지역별 당일 일기상황 등 안전교육 시행
 - ☞ 폭설, 강풍, 도로결빙, 안개 등 전일 사건사고 News 공유
- o!leh 체조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실시 (**자율적**)



2단계 : 작업지시 및 보호구 점검

- 팀장/조장은 금일 작업에 대한 내용, 목표량, 작업장소,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 역할분담 및 반드시 확인
- 동료와 함께 개인보호구 점검 (안전모/턱끈/안전화/방한복 단추/명찰 등)

3단계 : 현장 출동전 위험예지활동

- 금일 실시해야 할 작업에 대한 위험예지 활동 실시
 - 위험 포인트 체크(외부요인 : 폭설/기상 등, 기타요인 : 조급증 사고 예방)
 - ☞ 특히, 지장이전 등 위험작업 시행시 외부여건(지형, 기상 등) 필히 확인 점검
- 출동전 단체 구호 제창 (예 :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안전 제일!)

4단계 : 작업종료 및 정리정돈

- 작업환경 주위 정리정돈 실시 (개인보호구/작업 공구 등 정리)
- 조별 종료 '터치앤드콜' 실시 (예 : 오늘도 안전 무재해, 좋아 좋아!)
- 작업수행에 대한 일보 작성 (아차사고 등 발생시 체크하여 익일 공유)

[붙임 8] 고용노동부 특감 산업안전보건 (시정지시·조치결과 등)

• **과태료 부과·현황 (조치결과 등)**

법 조항	과태료 부과 현황	조치 결과		과태료 (만원)
		과태료 부과 원인	조치 사항	
제38조	50㎡(15평) 이상 철거작업시 석면조시 미 실시 (공사:26건)	신설법령 인지 미흡 공사 예산 절감	공사계약 조건 명기 담당부서 석면 교육	약1억원
제31조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시행 (법적 매월 2시간 이상)	법인지사 교육 미시행 (사무직 간주)	법인지사 교육 시행 (2012.3월~)	약4천만원
제43조	건강검진 미시행	2차검진 미시행시 (과태료 부과 미인지)	검진 독려 정기 교육 시행	약7천만원
제10조	산업재해 보고(1개월 이내) 하지 않은 경우	신설법령 인지 미흡 관리자 교육 미흡	신설법령 적극 안내 관리자 교육 시행	약6천만원
제15조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50인이상 사업장)	법령 해석 차이 (노동부 근로감독관)	선임 (본사는 미해당)	약4천만원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100인이상 사업장)		개최 (본사는 미해당)	약2천만원
제36조	곤도라 안전검사 미 실시	법정검사일정 인지부족	전문업체 선정	5백만원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MSDS 현행화 미흡	MSDS 자료 배부	1천5백만원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공사원가 절감	공사계약 조건 명기	1천7백만원

• **세부조치 결과 (시정지시 등)**

법조항	시정지시 (시정명령 등)	조치 결과	대상
제43조	전력요원 축전지실 출입자 특수검진 미시행	축전지실 단시간작업으로 특수검진 명확히 제외(노동부 협의 완료/2.20)	사업지원 센터
제23조	청사내 전원분전반 안전조치 미흡	안전2중 커버 부착 등 절연저항 측정	
제24조	중량물 취급 계획서 미작성 크레인차량 운영 계획서 미작성	중량물(차량) 운영 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확보)	현업 지사
제24조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미준수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교육 (경지2012-257 현업부서 문서안내)	
제3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시행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프로그램 활용)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담당자 교육 미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시행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자료 활용)	분당 사옥
제23조	옥상층 엘리베이터 조속기실 안전조치 미흡	조속기실내 와이어 안전덮개 (안전커버) 조치 완료	
제24조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미시행	2013년 정기 조사후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출(예정)	
제24조	구내식당 도시가스 정전기발생 조치미흡 및 방수형콘센트 미사용	도시가스배관 접지 전위차본딩 설치 일반콘센트→방수형 전체 교체	구내 식당

[붙임 9] 산업안전보건활동 주요관리 사항 (서류 등)

구분	주요 항목	비고 1	비고 2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게시 유무	개정 법령사항 등	100 인 이상
	○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유무	종합문서 kt Legals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유무	분기별 작성	100 인 이상
관리 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비치 유무	지정서(자체관리)	지사장 (100 인 이상) 3 개월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 유무	산업안전보건공단(6H)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비치 유무	지정서(자체관리)	
교육	○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8H) 유무	사이버교육	인재원 신설(예정)
	○ 정기안전보건교육(월 2H) 유무	사이버교육	순수 사무동 사옥(제외)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유무 (년 16H 이상 또는 반기 8H 이상)	사이버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지	자체교육(16H)	밀폐공간 맨홀작업
재해	○ '요양신청서' 제출유무(1 개월내 공단접수)	재해발생시	사업장 3 년 보관
	○ '재발방지대책' 수립 유무(교육 포함) (중량물/특수차량 취급 계획서 등)	현장부서(특기팀 등) 지역본부 선로지원팀	사업장 3 년 보관
건강 검진	○ 건강진단 실시(근로자건강진단결과표)	사업장보관(5 년)	
	○ 2 차 건강진단 실시 유무(대상자)	사업장보관(5 년)	
	○ 작업환경측정 실시 유무	맨홀작업등	외부 측정기관
	○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무 (대상자)	맨홀작업자	외부 검진기관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실시 유무	3 년마다 실시	2013 년 조사(예정)
	○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유무	아침행사	Olleh 체조 등
	○ 중량물 취급작업장 '무게중심표지판' 부착	기계실 및 창고	
보호 구	○ '보호구 지급 대장' 관리 유무	맨홀작업 등	
	○ '검정필' 규격 보호구 사용 여부	안전화/안전모 등	
방호	○ 사업장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해당설비 공조실, 사다리, 조속기 등)	특기팀 등	(미끄럼 방지판 등)
	○ 계단 등 난간대 설치 (높이 1M 이상)	해당사업장 (보유시)	
	○ 기타 안전기준 준수 유무		
유해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유무	현장부서	유류탱크 구내식당 공조실 등
	○ 경고표지판 부착 유무 (유해물질 용기)		
	○ MSDS 교육실시 유무 (해당물질 취급자)	자체 정기교육	
	○ 미 사용물질 방치 (페인트, 세척제 등)	현장부서	

【붙임 10】 구내식당 위생점검표<식품의약품안전청 지도점검표 준수>

구내식당 위생점검표

□ 점검일시 : 2014. . . ()

결 재	담당	00	00

구 분	위생 점검 항목	점검결과 (○ / X)
급 식 종사자	개인위생(신체, 두발, 손톱 등) 청결 단정 여부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작업화 등 착용여부	
주 방 시설설비	바닥, 벽, 천장, 하수구 등 청결 여부	
	방충, 방서, 환풍시설 등 파손 및 청결여부	
	수세시설,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 여부	
식 재 료 관리상태	유효기간 경과 식재료 보관 여부	
	사용잔품 보관방법(밀봉 등) 적절성 여부	
	식재료 보관, 바닥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보존식 영하 18℃ 이하 144 시간 보관 여부	
	원산지(축산물, 쌀, 김치류) 표시 여부(게시 등)	
주방기구 관리상태	칼, 도마 등은 육류, 어류, 야채류 별도 용도에 따라 색상별 구분 사용 여부	
	음식 담은 용기의 위생적인 세척 및 보관 여부	
	세척, 소독된 기구는 재 오염되지 않게 보관 여부	
뒷정리	조리실은 청결, 정리정돈 되어 있으며 쓰레기 등 이물질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녹 제거, 배기후드, 주방바닥, 홀, 냉장고 보관)	
	행주, 도마 등 조리기구의 세척 및 소독 상태	
안전점검	최종 퇴청 시 점등시설, 전열기구 등 off 상태	
	환기구 및 가스배관, 중간밸브 잠김 확인 여부	
	전기설비[콘센트 노출(물/젖은 행주), 전선피복]	
구비서류	영업/집단급식소 신고현황, 위생교육증, 영영사자격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수기 등 소독현황	
* 특이사항		